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6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명, 제1조 내지 제4조, 제7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3조, 제24조 내지

제26조, 별표 1 내지 3, 서식 2호 내지 8호, 서식 10호 내지 12호)

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안 제 2조, 제3조, 서식 4호, 8호)

다. 행정규칙 내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Bar-Chart’를 ‘막대 차트(Bar-Chart)’로 변경(안 - 별표 1)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전자우편: kyungd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 제 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u>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u>NET</u>)인증(이하 “<u>신기술인증</u>”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③ “<u>인증신기술</u>”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신기술로 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 제2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u>을 말한다.	<u>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u> 제1조(목적) ----- ----- ----- ----- ----- ----- ----- ----- ----- <u>NET</u>)지정(이하 “<u>신기술지정</u>”-----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③ “<u>지정신기술</u>”----- ----- ----- ----- <u>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u> ----- --.

④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기술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3조(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접수) ① 신기술인증의 대상은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유효기간연장의 대상은 영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 신청·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④ -----
지정신기술-----
-----.

⑤ -----

---- 지정심사-----
-----.

제2장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3조(신기술지정의 대상 및 신청·접수) ① 신기술지정-----

-----.

② 지정유효기간연장-----

----.

③ ----- 지정 -----

-----.

산업통상부 -----

지정 -----

한다.

④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규칙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제3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4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④ 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④ -----
---- 지정 또는 -----
----- 지정유효기간연장

----- 신기술지정신청서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① ---- 지정-----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정 -----

-----.

⑤ (현행과 같음)

⑥ 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생략)

제7조(3차심사(종합회의심사)) ①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인증기술 선정, 인증기간 확정·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제8조(신기술의 선정) ① ~ ③ (생략)

④ 3차심사에 상정된 기술 중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신기술인증에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⑤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

⑥ -----

-- 지정심사-----.

⑦ (현행과 같음)

제7조(3차심사(종합회의심사)) ① -----

----- 지정
의 -----
--- 지정기술 선정, 지정기간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기술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신기술지정-----
----- 지정 예정
기술-----.

⑤ ----- 지정기간을

을 부여할 때는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1차심사시 신기술 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나. (생략)

2.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1차심사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3차심사에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⑥·⑦ (생략)

--- 지정기간 -----

-----.

1. ----- 지정기간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지정기간-----

-----.

3. -----
-- 지정기간-----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평가기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신청기술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검색,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고)

평가기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3차심사 완료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뢰하여 신기술인증 예정사실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① ~

⑦ (생략)

⑧ 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제11조(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 ③ (생략)

⑧ ----- 지정제도, 신청기술의 지정심사 -----
----- 지정신기술 검색, 지정신기술 -----
----- 지정과 -----
----- 신기술지정 -----

-----.

제9조(신기술지정 예정기술공고)

신기술지정 -----
-----.

제10조(신기술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지정기간-----
-----.

제11조(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생략)	제12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기관은 연간 신기술 <u>인증</u> <u>현황</u> 을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u>지정</u> <u>현황</u> ----- ----- -----.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 ⑤ (생략)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의 <u>신기술인증</u> 취소에 대한 심사	5. ----- <u>신기술지정</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 ② (생략)	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6항제5호의 <u>신기술인증취소</u>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2. ----- <u>신기술지정취소</u>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u>신기술인증</u> 대상기술의 선정	5. <u>신기술지정</u>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기관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기
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영
문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
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인 신기술 적용
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
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
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
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
을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
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9조(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

용에 대한 조치) ① 신기술 인
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
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

----- 영
문지정서 및 확인서의 -----

-----.

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

--- 지정기간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기술 지정표시의 부정사

용에 대한 조치) ① ----- 지정
표시-----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NET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한자

2. 3. (생략)

④ (생략)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가 NET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신기술인증의 지원) 국가 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 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 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신기술지정-----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정 -----

-----.

제20조(신기술지정의 지원) -----

-----.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지정 -----

제21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제21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① -

----- 지정-----

-----.

② ----- 신기술지정 ----

-----.

③ -----
----- 신기술지정-----

-----.

1. ---- 지정번호
2. 지정받-----
3. 신기술지정-----

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 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영문확인서가 있는 경우 영문확인서도 포함)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은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
 2. ~ 4. (생략)
 5.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③ (생략)
- ④ 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평가는 시중에 유통중인 신기술인증 표시를 사용한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

4. 신기술지정-----

④ ----- 신기술지정 -----

----- 지정서(영문 지정서)----- 영문지정서
도 -----

-----.

제22조(신기술의 사후관리) ① -----
----- 신기술지정 -----

-----.

1. 지정기술-----

 2. ~ 4. (현행과 같음)
 5. --- 지정기술-----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지정기술 -----
----- 신기술지정
표시-----
-----.

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신기술인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 삭제

⑧ (생략)

제23조(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비용의 수수 및 사용 등에

--.

⑤ ----- 신기술지정 -----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지정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정평가 -----

관한 업무는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위탁한다.

제25조(업무지도)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인증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각 사업의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이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

제25조(업무지도) ① -----
----- 신기술지정 -----

-----.

-----.

② ----- 지정 -----

-----.

-----.

제26조(고객만족도 조사) -----
----- 지
정신청자 또는 지정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같음)
--	---

[별표 1]

신청기술 설명서 기재사항(규칙 별지 제2호 서식관련)

1. 개발기술의 내용 및 파급효과

○ 개발기술의 개요

- 개발기술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
 -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서술
 - * 개발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개발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개발기술의 기술적인 파급효과

- 기술적인 파급효과는 기존기술과 개발기술간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와 개발기술의 용도 및 적용분야에 따른 효과를 서술
- 개발기술로 인한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개발기술의 경제·산업적인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경쟁기업 기술동향

- 개발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을 서술
 - * 국내외 경쟁기업 기술개발 동향 등을 요약서술
- 개발기술과 관련한 유사 및 동종기업의 개발현황을 서술
- 개발기술과 관련한 후발참여 예상기업의 현황을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3. 핵심요소 기술내용

○ 핵심요소기술 및 주요내용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은 세부 핵심요소기술(무엇을) 및 범위에 대한 개발내용(어떻게, 왜)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서술
 - 첨부한 기술설명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요약하되 개발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개발기술의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자료임
- 핵심요소기술별 특징
- 핵심요소 기술별 특징과 장점 등을 세부 핵심요소기술별로 구분하여 서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4. 개발기술 자원투입, 개발방법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복수응답가능)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공동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자체개발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장과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총 개발참여자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인원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기재
- 핵심개발참여자

-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원의 소속기관, 직위, 성명, 참여분야 등을 서술
 -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 등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필히 서술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용역도입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5. 단계별 기술개발과정

- 기술개발의 각 단계를 구분하여 서술
 - 각 단계에 대한 소요기간을 서술
 - 각 단계별 기술개발내용을 서술
 - 각 단계에 따른 소요비용을 서술
 - * 단계에 적혀 있는 내용은 (예시)로서 개별 기업의 일정에 맞게 반드시 수정하여 서술하여야 함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6. 산업재산권 등 인증실적 현황

- 산업재산권 출원·공고·등록현황
 - 개발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등의 핵심내용 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공인(시험)기관 시험실적현황
 - 개발기술과 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실적현황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예시)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인(시험)기관명, 시험일자, 시험항목 등 내용을 기재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자료임
-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실적현황

- 개발기술과 관련된 품질인증관련 인증실적 등의 핵심내용 만을 기재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함

○ 타인의 산업재산권과의 관계

- 개발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내용, 현재의 상태, 향후전망 등을 기재
-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를 별지로 첨부함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7. 국내외 유사·경쟁기술과의 특징비교(정량적 비교)

○ 국내외 유사·경쟁기술과의 특징을 비교

- 기존의 국내외 기술 중 성능·기능면에서 가장 유사하고 우수한 기술과 비교하되 주요항목을 가능한 많이 설정하여 핵심기술별 특징을 구분하여 기재
- * 예시) 각 항목은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공인기관 또는 수요처의 시험성적서, 품질·성능 평가서를 첨부함
- 현재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 당사기술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기재
- 국내 및 선진국 유사·경쟁기술은 실현되어진 정량적 수치를 기재
- 비교대상 제품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8.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

○ 제품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형태,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적용제품이 없는 경우 개략도, 구성도 등을 부착
- 적용제품이 제품의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된 때에는 완성품 사진과 적용부분품 사진을 각각 부착
- 사진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도면첨부 가능

- 제품의 용도: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주요 용도를 서술
- 제품의 기능: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주요 기능을 서술
- 국내외 경쟁사 유사·대체가능 제품
 - 개발기술 또는 유사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국내외 경쟁사 제품의 현황을 서술
 - * 예시) 회사명, 제품명, 출시일을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분하여 작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적 특징: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차별적 특징을 서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9. 적용제품의 생산, 판매 계획

- 적용제품 판매개시 예정일: 적용제품의 판매개시 예정일을 서술
- 판매시점까지의 일정계획: 판매시점까지의 일정계획을 막대 차트(Bar-Chart)를 이용하여 작성
- 적용제품의 주된 시장: 해당되는 항목을 표기(복수응답가능)
- 적용제품의 매출, 생산 등
 - 적용제품의 매출 및 생산 예상치를 적용제품 판매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기재
 - * 예시) 매출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생산량과 설비능력의 단위 기재
 -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 규모의 예상치를 기재(단위: 억원)
- 시장측면의 신청사유
 - 정부·공공기관 납품, 초기시장 확장, 수요자 품질보증, 조세·자금지원 등 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주요사유를 서술
-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허가받아야 할 사항
 - 적용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받아야 할 허가사항 및 현황을 서술
 - * 예시)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득한 후 시판할 수 있음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별표 2]

신기술 지정 세부심사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1차 심사	<u>A. 기술성 평가</u> 1. 기술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적용성: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재현성: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발전성: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파급성: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가능성 정도 <u>B. 경제성 평가</u> 1. 기존제품대비성능: 기존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2. 생산·가격 경쟁력: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3. 시장규모: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u>C. 경영성 평가</u> 1.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2.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3. 지원효과 :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u>D. 추가 확인사항</u>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시제품의 확인 3. 추가확인 필요자료	• 평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2차 심사	<u>A. 기술평가</u>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u>B. 시제품평가</u> 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2. 부품, 재료등의 국산화 정도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u>C. 품질경영체계</u>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u>D. 자금지원</u> 1. 상용화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 평가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
3차 심사	•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평가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3]

신기술(NET) 지정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항목		정성적 항목	
	①평가집계표 평점	②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등록실 적	③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④신청기술·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3년	• 80점 이상	• 국내·외 특허 등록 1건 이상	- 기술수준이 선진기술에 해당하며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임 - 기술적용제품의 성능시 험 결과 등이 매우 우수함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상)	(대)
2년	• 75~80점 미 만	• 국내·외 특허 출원 1건 이상	- 기술수준이 선진기술과 차이가 없으나 수입대체가 가능한 기술임 - 기술적용제품의 성능시 험 결과 등이 우수함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중)	(중)
1년	• 70~75점 미 만	• 국내·외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실적 없음	- 기술수준이 선진기술과 는 격차가 있으나 국내우 수 수준 기술임 - 기술적용제품의 성능시 험결과 등이 양호함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하)	(소)

(예시)

- 신기술지정기간 부여를 위한 기간산정은 정량·정성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지정기간
을 합산하고 이를 4로 나누어 정함(소수점이하는 반올림)

[지정기간 산정예시]			
① 평가집계표평점 : 72점	_____	1년	
② 특허 출원·등록 : 출원 1건	_____	2년	
③ 기 술 수 준 : 대 / (중) / 소	_____	2년	
④ 시 장 규 모 : 상 / (중) / 하	_____	2년	
			7년 ÷ 4 = 1.75 ∴ 지정 2년

<별지 제2호 서식

신기술 평가의견서(2차평가)

과제 번호 :

(변경)기술명		
적용제품명		
심사결과		☐ 3차심사 상정 ☐ 보류(차기심사시 재심) ☐ 2차심사 탈락
평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기술평가	
	시제품 평가	
	품질경영 체계	
	지원효과 및 필요성	
지정기간		☐ 1년 ☐ 2년 ☐ 3년 ☐ 기타()

이름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서명) _____(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신기술 평가의견서(3차평가)

과제번호	기 술 명	지정기간	선정여부(○,×)
신기술 선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과제번호	사 유		

<별지 제4호 서식>

■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답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답변인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업무	소속 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소	
답변대상					
기술명					
답변 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기재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자료 목록)				

신기술 지정(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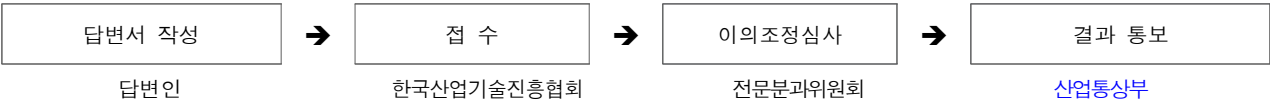
이의답변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답변인(대표자) 제출서류	이의신청 답변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신기술 지정 이의신청 평가의견서

이의신청대상	기술명		기관명	
이의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심 의 결 과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선정) ☐ 이의신청부분수용(기술명 변경 등) ☐ 기타()			
결 정 사 유				
평 가 내 용	기술내용			
	기술수준			
	적용제품 성 능			
	기 타 (산업재산권 등)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지정번호		기 술 명	
지정기간		적용제품	
기 관 명		기업규모	
심의결과	☐ 기간연장에 적합 (년) ☐ 기간연장에 부적합		
심 사 내 용	관련기술 개발동향		
	후 속 개발내용		
	지원효과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동의서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기관명			부서(학과)	직위	
전화			전송		
주소					
주 전공분야 (세부전공)					최종학위
현 연구분야					
주요경력					
심사참여 희망(가능)위원회(전공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v표)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	기계·소재분야	원자력분야	화학·생명분야	건설·환경분야
☐ 전자제품 ☐ 전자부품 ☐ 산업전자 ☐ 전기기기	☐ 통신 및 시스템 H/W ☐ 시스템 S/W ☐ 정보기술 S/W ☐ 응용 S/W	☐ 수송기계 ☐ 자동화기계 ☐ 일반기계 ☐ 정밀기계 ☐ 기계요소부품 ☐ 금속재료 ☐ 세라믹재료	☐ 원자력 ☐ 방사선	☐ 의약·생명 ☐ 정밀화학 ☐ 고분자·섬유	☐ 대기, 폐기물 ☐ 수질, 토양 ☐ 건설구조 ☐ 건설재료
심사비 입금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20 년도 신기술지정제도 심사위원직을 수락하고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제한 등의 행정제제도 감수하겠습니다.

1. 지정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신기술 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등록 및 본인 확인과 수당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공 등 연구분야, 은행계좌번호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 완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심사위원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의무 이행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기술 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합니다.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신기술 지정(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영문지정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업무	소속 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소	
구분	한글명			영문명	비고
기재 내용	기술명 (제품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신청 사유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지정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문지정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검 토 · 확 인 산업통상부	→	결 과 통 보 산업통상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신기술 지정(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지정번호		기 술 명	
지정기간		적용제품	
기 관 명		기업규모	
심의결과	☐ 지정취소(☐ 확인취소) ☐ 지정가능(☐ 확인유효)		
심 사 내 용	기술동향		
	제품품질		
	기 타 (산업재산권)		
판단내용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신기술 지정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_____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기술 일반현황

- 지정 기술명:
- 적용제품명:
- 모델명:
- 지정 기간(지정 번호): 20 . . . ~ 20 . . . (제 . . . 호)

2. 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공장)				전화	(본사) (공장)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매출액 (억원)	- 직전년도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수출액 (백만달러)	- 직전년도, : 만달러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적용제품 매출액 (억원)	- 직전년도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적용제품 수출액 (백만달러)	- 직전년도, : 만달러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주거래처				적용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적용제품 주경쟁업체		
지정기술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국내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해외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실용신안: 건 (기타,)					
적용제품 지정현황(NEP지정 등)						
품질인증 보유현황(ISO인증 등)						
기타 인증현황	1. 2.					

3. 적용제품 상용화(판매) 현황

☐ 상용화 이전	☐ 상용화 시작	(해당항목 √ 표시)
---------------------------------	---------------------------------	-------------

1) 상용화 이전의 경우	
상용화 시작 예정일	20 . .
상용화 시작 못한 사유(문제점)	
상용화 시점까지의 일정계획	
2) 상용화 시작된 경우	
상용화 시작일	20 . .
최초 납품처(금액)	(백만원)
향후 계획	

4. 신기술 지정이후 후속 개발 현황

특허 출원(등록)	특허명칭	
	출원(등록)일자	20 . . .
	출원(등록)번호	
공인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	공인기관명	
	시험(인증)일자	20 . . .
	시험(인증)항목	
	시험(인증)결과	
기타 후속 개발 내용		

5. 생산 시설 보유 현황

소재지	
생산장비	1)
보유내용	2)
기타 (외주생산의 경우 그 내용 기재 등)	

6. 품질(경영)인증 및 품질관리 현황

품질인증서	인증번호	
	인증기관	
기타 품질 인증 및 관리 진행 현황		

7. 종합 의견

기술개발 및 생산조직 체계
생산 및 공정관리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구매 및 자재관리
품질경영 및 생산성 향상 활동

<별지 제12호 서식>

지정 신기술 관련 실적 보고서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대 ☐ 중소 ☐ 벤처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_____ 성명/직위: _____ 연락처: () -					
NET지정기술 상용화개발 현황							
개발 현황	기술명	(지정번호: 호)					
	관련특허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상용화완료	지정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상용화진행중	지정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상용화미흡사유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시장미형성 ☐ 기타 ()					
전년도 NET마크 사용 및 제품판매실적							
마크 사용	제품명			모델명			
	사용방법	☐ 제품 ☐ 포장·용기 ☐ 홍보물 ☐ 사용 없음 ☐ 기타 ()					
	지정효과	☐ 있음 (☐ 제품신뢰도 ☐ 기업이미지 ☐ 매출증대 ☐ 기술력인정 ☐ 투자유치) ☐ 없음 ☐ 기타 ()					
제품 판매 실적	국내/외 판매	국 내		수 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우선구매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_____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_____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_____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기타 의견							

신기술(NET)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지정표시(NET마크)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